신안산대학교	강사인사 규정	규 정 번 호	2-3-14
		제 정 일 자	2019. 7. 15.
		개 정 일 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종류) 강사는 강의전담강사, 연구담당강사, 산학협력강사로 한다.

제4조(임용원칙) ①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 퇴직 ·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학과의 추천 [별지 3]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3.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2. 만65세 이하인자

제6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의 신규임용 계약은 매 학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한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담당 과목 또는 강의
6.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제9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 대학 교과과정, 예산, 해당 학과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0조(임용공고) 강사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 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

제11조(제출서류) 강사의 신규 임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추천서 1부. (학과 추천 시)
2. 강사 임용지원서 1부.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4. 재직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5. 소속 기관장의 겸직 동의서 1부.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심사기구 구성) ① 신규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과의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가족 ·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촉 해지)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②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신규임용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명기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수 순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까지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단 지원자수를 고려하여 2~7배수까지 범위내로 할 수 있다.

제17조(임용제청) 총장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 예비순위자를 포함한 신규강사의 임용동의를 제청한다.

제18조(임용유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19조(임용취소)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은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예비순위자임용)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또는 후)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2조(당연퇴직) ①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제2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 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한다.

제23조2(재임용 거부)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 소속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학과의 전임교원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재임용기준)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별지5,6] 강사 재계약 학과평가표와 강의 설문 평가표에 의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강의 설문 평가를 하지 않는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별지7] 강사 재계약 학과평정표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의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 <2020.10.12. 개정> <2021.12.23. 개정> <2022.04.21. 개정>

제25조(재임용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26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제27조(강사의 소속) 강사가 본 대학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타교 강의) 강사는 타교에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2개 학기 9학점 이상의 강의를 하는 강사는 겸 · 초빙 교원으로만 출강할 수 있다.

제29조(급여) 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강사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부(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2021.8.20. 개정> <2023. 3. 30. 개정>

가.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강사 임용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규 강사 임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심사를 위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심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 력 / 연구·교육 / 경력연수 / 직 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강 사	1	1	2	1	2	3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2]

교원임용지원서

접수번호	/

0000학년도 0학기

지원구분	강사	지원학과		지원분야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사 진 (3㎝ × 4㎝)	
	한 문		연 령	만 ( )세	성별			
	영 문		국 적		종교			
연락처	현주소	( ) - ( )						
	자택 전화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직 장 명			직 위					

병역관계		미필/면제사유	

학 력 사 항						
구 분	학교명	학 과	세부전공	학위명	평점/만점	기 간
고등학교						0000.00.00 ~0000.00.00
전문학사						0000.00.00 ~0000.00.00
학 사					/	0000.00.00 ~0000.00.00
석 사					/	0000.00.00 ~0000.00.00
박 사					/	0000.00.00 ~0000.00.00
학위논문명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학위 논문제목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별지 3]

경력사항 목록

성 명		지원학과		지원분야	

1. 산업체경력

번호	기 관 명	부 서	직 위	담당업무	재직기간	재직연월
1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2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3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4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5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경력

2-1. 전임 및 겸임교원 이상

번호	대 학 명	소 속	직 위	담당과목	재직기간	재직연월
1				1. 2.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2				1. 2.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3				1. 2.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4				1. 2.	0000.00.00 ~ 0000.00.00	년 개월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및 교육 경력사항은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2. 강사

연도	학기	강 사 교 육 경 력								합계
		대학명	강의시간	대학명	강의시간	대학명	강의시간	대학명	강의시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학년도 기준 : 1학기 (3. 1 ~ 8. 31), 2학기 (9. 1 ~ 2. 28)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4]

강사 추천서

학 과 명			구 분	강사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본직기관명		전화번호	
	직 위		핸드폰	
	현 주 소			

학 력 사 항	구분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전 공	학위명
	학사	. . . ~ . . .				
	석사	. . . ~ . . .				
	박사	. . . ~ . . .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과 목	담당과목	담당시수	비 고

추천 사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강사로 임용하고자 추천합니다.

과 학과장 : (인)

소속학과 교수 동의 날인

신안산대학교총장귀하

[별지 5]

강사 재계약 (학과) 평정표

학과		직위		성명	

번호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1	학과발전 기여도	A(매우우수) (15점)	B(우수) (12점)	C(보통) (9점)	D(미흡) (6점)	E(매우미흡) (3점)	
2	학과 교수와의 인화관계	A(매우우수) (15점)	B(우수) (12점)	C(보통) (9점)	D(미흡) (6점)	E(매우미흡) (3점)	
3	강의능력 및 성실성	A(매우우수) (20점)	B(우수) (17점)	C(보통) (14점)	D(미흡) (11점)	E(매우미흡) (8점)	
4	강사로서의 책무와 자세	A(매우우수) (20점)	B(우수) (17점)	C(보통) (14점)	D(미흡) (11점)	E(매우미흡) (8점)	
합 계 (70점)		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학 과 직 위 성 명

(인)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6]

강의설문 평가표

학과		직위		성명	

평가항목		점수	평점	비고
강의설문조사결과	평점 × 6		30	직전학기
소 계			**30**	

※산정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지 7]

강사 재계약 (학과) 평정표

학과		직위		성명	

번호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1	학과발전 기여도	A(매우우수) (20점)	B(우수) (17점)	C(보통) (14점)	D(미흡) (11점)	E(매우미흡) (8점)	
2	학과 교수와의 인화관계	A(매우우수) (20점)	B(우수) (17점)	C(보통) (14점)	D(미흡) (11점)	E(매우미흡) (8점)	
3	강의능력 및 성실성	A(매우우수) (30점)	B(우수) (25점)	C(보통) (20점)	D(미흡) (15점)	E(매우미흡) (10점)	
4	강사로서의 책무와 자세	A(매우우수) (30점)	B(우수) (25점)	C(보통) (20점)	D(미흡) (15점)	E(매우미흡) (10점)	
합 계 (100점)		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학 과 직 위 성 명

(인)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